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보건복지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산부에 대한 산후조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도 관할 구역 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 주체를 확대하고, 산후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612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주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추가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과 비슷한 성격의 급여나 사회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4. 4. ~ 5.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6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산후조리원”을 “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의7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19제2항”을 “법 제15조의20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0제1항”을 “법 제15조의21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6호 중 “법 제15조의19”를 “법 제15조의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법 제15조의20”을 “법 제15조의21”로 한다.

별표 2의2의 제목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다목 중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가

목1)나)·다), 같은 목 2)다) 및 같은 호 나목2) 중 “산후조리원”을 각각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1)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산후조리원”을 각각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하고, 같은 목 2)가)부터 자)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하며, 같은 목 2)가)부터 자)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산후조리원”을 각각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산후조리원”을 각각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산후조리원”을 각각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등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2호다목2)가)부터 자)까지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u>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u>산후조리원</u> 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2와 같다.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 -----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 ---- <u>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u> ----
제17조의7(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① (생략) ② <u>산후조리도우미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u> ③ (생략)	제17조의7(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8(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법 제15조의19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제17조의8(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① ----- <u>법 제15조의20제2항</u> ----- ----- ----- -----.

1. · 2. (생략) ② (생략)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방법) ① <u>법 제15조의20제1항</u>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방법) ① <u>법 제15조의21제1항</u>-----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	--

6. <u>법 제15조의19</u> 에 따른 산후 조리원 평가에 관한 사무	6. <u>법 제15조의20</u> ----- -----
7. <u>법 제15조의20</u> 에 따른 산후 조리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7. <u>법 제15조의21</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397